

# 2024 『세법노트북(1쇄)』 추록 및 정오표

2024 『세법노트북』(1쇄)의 추록 및 정오표를 올립니다. 세법 시행령이 당초 안과 비교하여 일부 수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고, 일부 오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.

## 세법 노트북-부가가치세법 1쇄

페이지	수정전	수정후
p9		
p66	*1) 신용카드매출전표등(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포함) : 신용카드매출전표, ~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<b>개정</b>	*1) 신용카드매출전표등 : 신용카드매출전표, ~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
p78	예 중소법인(제조업, 제1기(전기) 말~	예 비중소법인(제조업, 제1기(전기) 말
p112	③ 둘 이상의 사업장이 ~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. ~	③ 둘 이상의 사업장이 ~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사업자. ~

## 세법 노트북-법인세법 1쇄

페이지	수정전	수정후
p38	$\text{손금불산입 대상 대상 손해배상금} = A \times \frac{B-1}{B}$ <p>A : ①의 법률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B : ①의 법률 또는 외국 법령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배수</p>	$\text{손금불산입대상 손해배상금} = A \times \frac{B-1}{B}$ <p>A : ①의 법률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B : ①의 법률 또는 외국 법령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배수</p>
p130	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: (1)+[(2) 또는 (3)]	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: (1)+(2)+(3)

## 세법 노트북-소득세법 1쇄

페이지	수정전	수정후												
p48	<p>개인(사업소득)</p> <p>기준소득금액* - 이월결손금</p> <p>* 기준소득금액 = 차가감소득금액 +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</p> <p>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 정치자금기부금</p> <p>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 정치자금기부금 - <b>고향 사랑 기부금</b> <b>개정</b></p>	<p>개인(사업소득)</p> <p>기준소득금액* - 이월결손금</p> <p>* 기준소득금액 = 차가감소득금액 +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</p>												
p49	<p>주2) 개인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 <th>지출액(B)</th> </tr> <tr> <td>특례기부금</td> <td>10(시가) + 3.9 = 13.9</td> </tr> <tr> <td>일반기부금</td> <td>12</td> </tr> </table>	구분	지출액(B)	특례기부금	10(시가) + 3.9 = 13.9	일반기부금	12	<p>주2) 개인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 <th>지출액(B)</th> </tr> <tr> <td>정치자금·특례기부금</td> <td>10(시가) + 3.9 = 13.9</td> </tr> <tr> <td>일반기부금</td> <td>12</td> </tr> </table>	구분	지출액(B)	정치자금·특례기부금	10(시가) + 3.9 = 13.9	일반기부금	12
구분	지출액(B)													
특례기부금	10(시가) + 3.9 = 13.9													
일반기부금	12													
구분	지출액(B)													
정치자금·특례기부금	10(시가) + 3.9 = 13.9													
일반기부금	12													
p74	⑥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·골동품의 ~	⑥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·골동품의 ~												